

[제목개정 2018.08.27.]

# 특별교수 등 비전임교수제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년 04월 18일 개정 2018년 08월 27일 개정 2019년 08월 23일 개정 2021년 2월 5일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특별교수 등 비전임교수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**제2조(명칭 및 정의)** ① 특별교수 등 비전임교수(이하 “특별교수 등”이라 한다)는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과 덕망을 갖춘 비전임 명예직 교원이다. <개정 2018.08.27.>

② 특별교수의 각 명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명예교수 : 본교에서 15년 이상 근속하고 퇴임한 전임교원 중 대학 교육발전에 현저히 공헌하고 교수로서의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 임명된 교원.

<개정 2018.08.27.>

2. 석좌교수 :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으로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개인 또는 기업체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이나 대학의 교비로 연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임명된 교원.

3. 외국인 명예교수 : 사회활동 및 연구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을 교육현장에 도입 가능하여 임명된 교원.

4. 특임교수 : 사회적 명성이 있는 자로서 국제화, 취업, 교육,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명된 교원.

③ 비전임제 교수의 명칭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. [본항신설 2018.08.27.]

1. 초빙교수 : 특정분야에 종사하거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본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명된 교원

2. 대우교수: 특정분야에 종사하거나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그 역량이 학교에 필요하여 본교의 운영 및 교육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임명된 교원

**제3조(의무)** ① 특별교수 등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 및 본교의 제 규정을 준수하

여야 하며,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8.08.27.>

② 특별교수 등은 본교에서 요청하는 특강, 초청세미나, 해당 직종의 역할과 부합하는 일 등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**제4조(임명절차)** ① 특별교수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<개정 2018.08.27.>

② 특별교수 등을 임명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1. 특별교수 등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<개정 2018.08.27.>

2. 특별교수 등 추천서(별지 제2호 서식) <개정 2018.08.27.>

3. 특별교수 등 공적서(별지 제3호 서식) <개정 2018.08.27.>

4. 기타 임명에 필요한 서류

**제5조(임명 취소)** 특별교수 등이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8.27.>

## 제2장 명예교수

**제6조(자격)** 명예교수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본교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전임교원 중 교육, 취업 등의 분야에서 대학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

<개정 2018.08.27.>

2. 본교 전임교원 3/4의 연명으로 총장에게 추천된 자(별지 제4호 서식) 또는 필요한 경우에 총장이 명예교수 임명 대상자로 직접 추천한 자

**제7조(직무 및 처우)** ① 명예교수는 본교의 교육, 연구 등 학술 활동과 기타 대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학에 기여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② 위촉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, 임기가 만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.

③ 명예교수는 총장이 초청할 경우,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석좌교수

**제8조(자격)**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
1.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·외 저명한 인사로서 석좌교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 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이나 대학의 교비로 연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

**제9조(직무 및 처우)** ① 석좌교수는 본교의 교육, 연구 등 학술 활동과 기타 대내외 활동 등을 통하여 대학에 기여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- ② 위촉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, 임기가 만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. 단, 기금 출연으로 인해 임명된 석좌교수의 임기는 기금이 출연된 연구의 연구기간으로 하며, 기금이 추가로 출연될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특별대우를 할 수 있다.
- ④ 석좌교수는 총장이 초청할 경우,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# 제4장 외국인 명예교수

**제10조(자격)** 사회활동 및 연구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을 교육현장에 도입 가능한 자를 외국인 명예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

**제11조(직무 및 처우)** ① 외국인 명예교수는 본교 및 학과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교육, 산학협력, 취업 등의 분야에 기여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- ② 외국인 명예교수는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(사업)에 참여하여 자문 역할 및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. 특별강의 시에는 소정의 특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임기가 만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외국인 명예교수 활동으로 인한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우를 할 수 있다.
- ⑤ 외국인 명예교수는 총장이 초청할 경우,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# 제5장 특임교수

**제12조(자격)** 사회적 명성이 있는 자로서 국제화, 취업, 교육,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특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8.27.>

**제13조(직무 및 처우)** ① 특임교수는 국제화, 취업, 입학, 교육, 산학협력 등의 분야에서 본교 및 학과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. <개정 2018.08.27.>

- ② 특임교수는 관련분야의 특별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. 특별강의 시에는 소정의 특강료를 지급 할 수 있다.
-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임기가 만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특임교수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우를 할 수 있다.
- ⑤ 특임교수는 총장이 초청할 경우,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# 제6장 대우교수

[본장신설 2018.08.27.] <제목개정 2019.08.23.>

**제14조(자격)** 본교 전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제화, 취업, 교육 및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.

**제15조(직무 및 처우)** ① 본교와 전공분야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교육, 산학협력, 취업 등의 분야에 기여한다.

- ② 전공분야의 특별강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, 임기가 만료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대우교수는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면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우를 할 수 있다. [본항신설 2021.02.05.]
- ⑤ 총장이 초청할 경우, 교수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# 제7장 보칙

제16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23일 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# 별지 제1호 서식 <개정 2018.08.27.>

**특별교수 등 신청서**

지 원 분 야	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좌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명예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임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우교수 ※ 해당란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표 하세요.						사 진 (3.5×4.5)
추 천 학 과							
성 명	한글)	영문)	국적)				
1. 인적사항							
성 별	남( )	여( )	주민등록 번 호	- (만 세)			
현주소	(☎ )						
	자택 전화	( ) -	휴 대 폰	( ) -			
	E-mail						
최근 경력	기관명		직 위		전 화	( ) -	
2. 학력사항							
구 분	기 간	학 교 명	학 과 명	세 부 전 공	학 위 명	학 위 취 득 일	
고 등 학 교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학 사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석 사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박 사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	년 월 일	

3. 경력사항				
기	간	근 무 기 간	근무기관명	직위(담당업무)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년	월 일 ~	년	월 일	
4. 자격 및 면허				
종	별	시 행 기 관	취득년월일	비 고
			년 월 일	
			년 월 일	
			년 월 일	
5. 상벌사항				
종	별	수 여 기 관	수여년월일	비 고
			년 월 일	
			년 월 일	

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건신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

# 별지 제2호 서식 <개정 2018.08.27.>

## 특별교수 등 추천서

추천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명예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석좌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 명예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특임교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우교수    ※ 해당란에 ✓표 하세요.				
추천학과					
피추천자 인적사항	성명(한글)		국	적	
	성명(영문)		생년월일		
최종학력	대학(원)		석사(박사)		전공
주요경력	기 관 명		직위		근무기간
	기 관 명		직위		근무기간
	기 관 명		직위		근무기간
추천 의견 내용					
추천자	소속		직위		성명 (인)

